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5일, 백승아 의원 등 5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8.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승아 의원)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상담 및 치료 권고와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 관련, 학생들은 정서·행동 문제를 겪을 때 적시에 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들은 이러한 지원 시스템 덕분에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던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절차가 결여되어 있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학 전문가가 아닌 교사와 학교장이 상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물리적 제지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요건에 부합하는 물리적 제지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리적 제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들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아동 권리 보호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들 조치가 허용되는 범위를 엄격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서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